



제 429 회 국 회 (정 기 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업무 범위 확대 및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상향 조정 〉

■ 진중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41호)

2025.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업무 범위 확대	2
2.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상향 조정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진중오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9. 5.
3. 회 부 일: 2025. 9.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의 1만분의 35 이상 1만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부담금 비율이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스포츠 분야의 사행산업 또는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이용이 커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스포츠도박 중독 문제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스포츠도박에 대한 별도의 예방과 치유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업무에 청소년의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Ⅲ. 검토의견

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업무 범위 확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업무에 청소년의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을 추가하고 있음(안 제14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①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4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① -- -----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설></u>	<u>7의2. 청소년의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u>
8.·9. (생략)	8.·9.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다. 검토의견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라 함)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문제 및 중독과 예방·치유·재활 등의 사업과 활동을 위해 2013년 8월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임¹⁾.
- 예방치유원은 현재 도박문제 예방홍보, 예방 및 치유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 강화를 위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확대, 청소년 도박예방 교육 및 상담 인력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예방치유원의 업무 범위에 청소년의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치유원의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①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
3.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5.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재활 사업 지원
6. 예방·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7.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정부 또는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

② 예방치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⑦ 예방치유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최근 스마트폰 보편화, 게임과 불법의 경계 모호, 불법 OTT 사이트 광고 등을 통한 청소년의 불법도박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예방치유원의 치유재활 서비스 이용인원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6.5%에서 2025년 8월 21.1%까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연령별 도박중독 치유재활 서비스 이용인원*]

(단위: 명, %)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무응답	합계
2022	인원	1,460	7,104	7,276	3,793	1,230	596	98	822	22,379
	비율	6.5	31.7	32.5	16.9	5.5	2.7	0.4	3.7	100.0
2023	인원	2,093	6,154	6,828	3,718	1,284	558	104	1,085	21,824
	비율	9.6	28.2	31.3	17.0	5.9	2.6	0.5	5.0	100.0
2024	인원	4,144	6,308	6,603	3,667	1,386	659	162	305	23,234
	비율	17.8	27.1	28.4	15.8	6.0	2.8	0.7	1.3	100.0
2025 (8월)	인원	3,273	3,865	4,311	2,389	1,026	510	123	11	15,508
	비율	21.1	24.9	27.8	15.4	6.7	3.3	0.8	0.1	100.0

* 지역센터, 전문상담기관, 헬프라인, 넷라인 등 1회 이상 치유서비스를 받은 실인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청소년 도박은 청소년 개인의 도박중독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피해를 미치고, 도박비 마련을 위한 2차 범죄로 이어지는 등 새로운 문제를 파생시키는 바, 적시에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안이라 볼 수 있음. 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문제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2조 1,739억원²⁾으로 추계됨.

2) 직접비용(도박 손실비용, 부채비용 등) 9,793억원, 간접비용(미래소득 감소, 부모의 생산성 감소 비용 등) 1조 1,657억원, 기회비용(은행 예금 등) 289억원

○ 법률에 일반적인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특별히 지원하거나 규제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예방치유원의 업무도 제2호에서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7호에서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제3조에서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 마련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³⁾, 제8조부터 제10조의2까지 개별적인 체육 분야의 진흥에 대한 시책 마련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⁴⁾.

3)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 체육의 진흥) 학교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도·감독한다.

제10조의2(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의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예방치유원의 업무 범위인 예방·치유·재활사업에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어 조항을 신설할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 예방치유원은 청소년의 도박은 스포츠에 국한하지 않고 온라인 카지노(바카라), 실시간 게임(사다리 등)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체 도박을 포괄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제시함.
- 따라서, 청소년 도박문제는 단순히 스포츠도박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예방치유원의 업무를 명시적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도 “청소년의 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상향 조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1만분의 75 이상 1만분의 100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있음(안 제14조의2제1항, 제2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예방치유원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u>1만분의 35 이상 1만분의 50</u>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 ----- ----- ----- ----- ----- <u>1만분의 75 이상 1만분의 100</u> ----- ----- ----- ----- ----- -----.
② 위원회는 부담금을 부과할 때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 제5조제1항	② ----- -----

[해외 도박중독 관련 부담금 부과(적립) 현황]

(‘25.10월 기준)

구분	재원조달
영국	순매출액의 0.1%~1%,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 온라인 운영자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순매출액의 1.1% - 지상 기반 카지노 및 베팅 운영자 : 순매출액의 0.5% - 성인게임센터, 코스 내 마권업자 및 빙고 시설 : 순매출액의 0.25%
네덜란드	순매출액의 0.25%
뉴질랜드	순매출액의 0.43~1.0% (유형별 차등)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카지노 순매출액의 2%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세금 징수 - (버지니아주) 스포츠 베팅 세금 수익의 2.5% - (오하이오주) 스포츠 베팅 세금 수익의 2%(문제도박 기금으로 적립)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현재 우리나라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 부과기준은 연간 순매출액의 1만분의 35 이상 1만분의 50 이하이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1000분의 3.5(0.35%)로 정하고 있음⁵⁾.

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② 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비율은 연간 순매출액의 1000분의 3.5(이하 이 항에서 “기본부담비율”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낮추는 비율의 합산 결과가 사행산업사업자별로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이 없는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2.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결과를 고려하는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3.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를 고려하는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4. 「지방세법」에 따라 레저세 및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사행산업의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20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징수 및 관련 사업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부담금 징수	20,041	13,183	17,243	23,856	24,560	25,734
사업예산 ⁶⁾	22,665	23,175	22,024	21,793	24,426	23,48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부담금 비율의 상승은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특히, 최근 온라인 카지노의 성행 등으로 인해 청소년 도박 등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만큼, 동 사업의 확대 필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음.

-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을 수행하는 예방치유원은 청소년 도박문제 급증 등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역센터 및 전문상담기관 확대,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규모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6)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수행하는 도박문제 예방치유사업(5165-300)

[2026년도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 증액 요청안]

(단위: 백만원)

구분		내용	증액금액
도박문제 예방홍보	①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확대	- 청소년 도박 예방 정책에 필요한 시의성·정확성을 담보한 데이터 생산을 위해 실태조사 표본규모 확대(13,000명 →20,000명)	120
	② 한국형 청소년 도박문제 수준 측정도구 개발	- 한국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 도박문제 수준 측정 도구 개발	200
도박중독 치유재활	③ 수요 맞춤형 민간전문상담기관 확대	- 치유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부족 현상 개선 및 청소년 치유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민간전문상담기관 확대	968
	④통합서비스 모바일 앱 구축 위한 ISP수립	- 웹(Web)에 국한된 서비스 한계를 넘어 도박문제 대응 강화를 위한 통합서비스 모바일 앱 구축 ISP 수립	160
	⑤ 이용자 맞춤형 치유매뉴얼 제작	- 최신 도박환경 및 대상별 특성 고려, 치유서비스 품질 향상 및 도박빈도 감소를 위한 매뉴얼 개발 및 보급	90
	⑥ 서비스 확충을 위한 지역센터 추가 설치	- 전국 17개 광역시도 균형 있는 서비스체계 구축을 통한 도박문제 예방·치유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및 수요대응 강화	2,712
합계			4,090

○ 또한, 전반적으로 외국의 경우 부담금 부담률이 0.1~2% 사이로, 우리나라의 부담률 수준인 0.35%에 비해 높게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사행산업매출총량제를 통해 사행산업 전체 매출 한도를 통제하고 있어 부담금 비율의 상승은 직접적인 사행산업의 사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을 야기할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한 부담률 기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⁷⁾.

7) 참고자료: 부담금 비율 상향 관련 기관 의견 참고

[비율 상향에 따른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액수 변화⁸⁾]

(단위: 백만원)

구분		0.35%	0.5%	0.75%	1%
(주)강원랜드		3,342	4,774	7,162	9,549
한국마사회		3,666	5,238	7,856	10,475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 진흥공단	경륜	740	1,057	1,586	2,115
	경정	367	524	786	1,049
	투표권	6,306	9,009	13,514	18,019
창원레포츠파크		93	133	199	265
부산시설공단		87	124	186	248
복권위원회		11,112	15,874	23,811	31,748
청도공영사업공사		21	30	45	59
계		25,734	36,763	55,145	73,527

- 기획재정부는 2025년 현재 부담금 여유자금(363억원)이 사업비(235억원)의 154.5% 수준으로 적립되어 있고, 코로나 이후 사행산업 매출이 증가 추세로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담금 비율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 아닌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5

8) 2025년 사업자별 감경을 적용 기준

※ 참고자료1 : 부담금 비율 상향 관련 기관 의견

업체명	의견 주요내용
강원랜드	● 현행유지 ① 사업자 부담 과도 및 부작용 우려 -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여 오히려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다양한 공익적 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우려. 특히 ‘폐광지역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등 법정 기금외에도 사회공헌 재단, 마음채움센터, 건전화추진팀 등 별도의 조직과 재원을 통해, 사행산업의 사회적 인식개선 및 도박문제 취약계층(청소년, 군인)의 예방 활동에 지속 투입하고 있어 이중삼중 부담 구조에 직면 ② 부담금 효율적 활용방안 논의 및 새 협력 모델 모색 필요 - 기존 부담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그간 수행해 온 예방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새로운 협력 모델 모색 필요
한국마사회	● 현행유지 ① 현행 체계의 불합리성 심화 - 경마 및 경륜·경정은 복권, 스포츠토토 등과는 달리 발매금액에 레저세 등 세금이 부과되어 제세납부금이 부담금 산정 모수에 포함되는 불공정 부과 문제가 있음(부과 기준인 순매출액의 약 60%가 조세에 해당) ② 축산발전기금 등 공적 재원의 출연 규모 감소 초래 - 부담금 증액은 농축산어민을 위한 축산발전기금 감소로 귀결되어 공익사업 간 자원배분 문제의 신중한 검토 필요 ③ 부담금의 효율적 집행 방안 모색 우선 필요 - 동 부담금의 '24년 집행률은 40% 수준으로 미집행에 따른 잔여액이 약 344억 원으로 추산되는 등 미집행액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필요 ④ 과도한 부담 - 경매매출액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채 정체되고 있는 반면, 인건비 등 고정비성 비용 증가에 따라 영업이익은 감소 추세이며, 코로나19 전후 연쇄적인 장외발매소 폐쇄로 사업여건은 지속 악화 등 오프라인 입장인원 감소와 중장기 경영악화 추세로 부담금 상향은 부담 가중됨
국민체육진흥공단	● 현행유지 ① 사업자 부담 과중 및 수익자 부담원칙 위배 -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매출총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부담금 비율상향은 사업자 부담이 과중되며, 합법사행사업보다 불

	법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중독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합법사행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상향 조치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반함 ② 중독예방치유부담금 계정 여유 - '24년도 잔여 부담금은 344억원으로 연간 부담금 규모 상회,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 업무 추가에도 현 재원으로 운영 가능
부산 시설공단	● 현행유지 ① 과도한 재정적 부담 - 구매상한제를 10년 이상 유지해 왔으나, 경제·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매출 기반이 축소된 상태에서 요율만 상향하면 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 수익성이 열악한 기관 존립 위협 ② 지방 경영 현실 미반영 및 부담금 산출기준 비합리성 - 지방 경기 침체로 이용자 감소 가속화 및 제세금까지 포함된 순매출액 기준이 아닌 수익금 기준 산출이 타당 ③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와 책임 불균형 - 청소년은 합법이 아닌 불법도박을 이용하는데 합법사업자에게 예방치유 비용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창원 레포츠파크	● 수정수용 ① 과도한 재정적 부담 - 부담금 하한을 0.75%로 상향할 경우, 적자 또는 수익성이 열악한 기관까지 일률적으로 높은 부담을 지게 되어 경영악화와 합법적 사행산업 위축 우려 ② 현행 제도 취지 무력화 - 기존 제14조의2 제2항은 “수익성이 열악하거나 건전화 평가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 0.35% 미만 부과 가능”이라는 완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하한선을 0.75%로 올리면 이 규정은 무력화되어 적자 기관 보호 장치가 사라짐. 상한 인상은 수용하되, 하한은 현행 유지(0.35%) 또는 적자 기관 면제 규정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 수정 요청